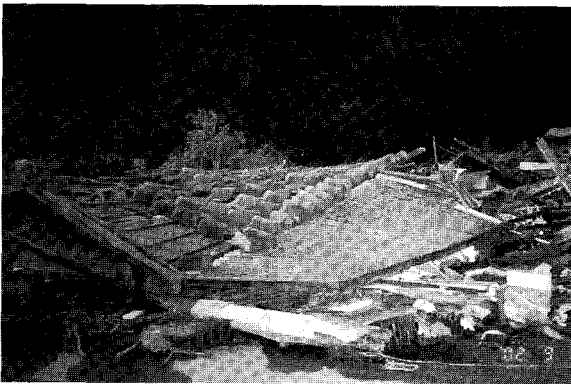


# 농업재해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서문

농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자연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자연조건의 미미한 변화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상도와 강원도 일대를 강타한 태풍 '루사'의 경우에도 농경지와 농작물 수만ha가 침수·도복되었으며, 약 4천여억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또한, 농업용 비닐하우스 468ha, 인삼·버섯 454ha, 양곡창 172동 등이 파손되고, 축산시설 571동이 파손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 폭풍으로 인해 무너진 집이 마치 폭탄을 맞은듯 하다.

그러나,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피해산정 규모나 적용에 차이가 있는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주먹구구식으로 동일법상에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재해대책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보조부분이 생계구호 및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민들의 영농제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농업재해대책 현황 및 문제점

### 1) 근거법규

현행 농업재해의 지원 근거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조 및 지원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근거법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볼 수 있다.

### 2)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현황 비교(우측 표 참조)

●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현황 비교

구 분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운용기관	중앙재해대책본부(행정자치부 재해대책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농림부 농산정책과)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폭설, 가뭄, 지진(해일) ※ 풍수해는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하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병충해 ※ 우박, 냉해 등은 농림부 자체적으로 추진
지원대상 피해규모	특별시의 구: 20억원 이상 광역시의 구: 11억원 이상 기타 시·군: 7억원 이상	한해·수해·풍해·냉해·조해·동해·병충해: 시·군당 50ha 이상 서리·우박·설해: 시·군당 30ha 이상 농업용시설·농경지·가축피해: 시·군당 3억원 이상 ※ 동일기간중 연접시·군도 지원가능
지원기준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	자연재해대책법 준용
피해액 산정기준	각종 시설물(수리시설, 비닐하우스, 축사등)의 피해액을 행정자치부 산정기준에 의거 산출, 농작물은 피해면적 및 피해율에 따라 당해 고시가격으로 지원	
복구지원 내용	긴급구호: 이재민구호, 생계지원, 중·고생 수업료면제 긴급영농지원: 농경지복구, 대파대, 농약대, 가축입식, 영농자금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시설복구: 비닐하우스, 축사, 잠실,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생산시설과 농업용 부대시설 공공시설 복구	

3) 농업재해대책의 문제점

① 후진국 수준의 소극적 재해관

현재 선진국들의 자연재해에 대한 비중은 예방 시스템구축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 이는 예방차원의 비용 지출은 그 몇 배에 해당하는 피해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의 소극적 재해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 예로 농·어업재해대책법상 한해 이외의 재해들(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조해·설해·동해·병충해)에 대해서는 전혀 예방규정 조차 마련되어 있

지 못하다는 것이다.(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2조의2)

② 지원수준이 낮아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어려움

동일한 자연재해라도 농업과 어업분야에는 별도의 농·어업재해대책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대상이나 지원수준은 응급복구 및 생계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지원 기준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어(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4항) 영농제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수마가 힘퀴고 간 자리. 충북 영동지역 포도밭도 이번 태풍으로 초토화 됐다.

농경지 복구비 경우 3ha미만농가는 복구비의 60%가 지원되고, 3ha이상농가는 40%만 지원되어 정부시책에 따라 규모화영농을 시행한 농가가 오히려 보상을 적게 받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비닐하우스 복구비의 경우에도 20%만 지원되고, 대

과대(중자/비료명목)는 70%, 농약대는 100%가 지원되지만 4~5만원대로 정액 지급되고 있어 태풍이후 다양한 병충해를 방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영농기술 개발에 따른 현대식 고가 시설들이 지원항목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현실적 지원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㉔ 지원 대상이 피해범위에 따라 한정됨

재해로 피해를 보았더라도 지원대상이 피해면적이나 액수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 한해, 수해, 풍수해 등은 피해면적이 50ha 이상, 서리, 우박, 설해에 의한 피해는 30ha이상, 농업용 시설 또는 농경지, 가축의 피해는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시·군에 속한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피해농가가 발생하고 있다.

● 특별 재해지역, 일반 재해지역, 특별 재난지역(고성) 재원 비율 비교

항 목	분 류	국 비	지방비	용 자	자부담
주택 복구비	일반재해지역	20%	10%	60%	10%
	특별재해지역	25%	15%	60%	0%
	특별재난지역(고성)	56%	6%	32%	6%
농경지 복구비	일반재해지역	50%	10%	30%	10%
	특별재해지역	55%	15%	30%	0%
	특별재난지역(고성)	50%	40%	10%	0%
농작물 대파비	일반재해지역	50%	20%	0%	30%
	특별재해지역	57.5%	27.5%	0%	15%
	특별재난지역(고성)	50%	40%	10%	0%
비닐하우스 복구비	일반재해지역	25%	10%	55%	10%
	특별재해지역	30%	15%	55%	0%
	특별재난지역(고성)	50%	40%	10%	0%
가축 입식비	일반재해지역	40%	10%	30%	20%
	특별재해지역	45%	15%	30%	10%
	특별재난지역(고성)	50%	40%	10%	0%

### ㉔ 피해율 계산이 비현실적임

피해율 산정에 있어 휴경지와 경작지를 구분하지 않고 휴경지까지 총 경작율로 반영하고 있어 피해율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고 있다. 또한, 작물별로 구분을 두지 않고 모든 작물의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피해율 산정이 이루어지므로 특정작물에 대한 극심한 피해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 ㉕ 재정 조달의 어려움

재해대책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아 매년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예비비에서 집행되고 있다. 이는 지원수준이 예산확보 정도나 정치적인 분위기에 따라 좌우됨으로써 재해대책의 재정안정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3. 개선방안


1) 적극적 재해관을 가지고 예방위주의 방재대책을 수립해야 함

정부는 적은 비용의 방재시스템 구축이 그 몇 배 이상의 복구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모든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규정을 입법화해야 한다.

### 2) 농업재해대책법 제정

태풍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재해에 대해 다르게 영향을 받는 어업재해와의 상이성을 인정하고 △대파시 농기계 가동·임대비를 생산비에 포함하여 피해작물의 생산비 70%이상을 국가에서 보상 △대파가 불가능한 경우 5년간 소득평균의 80% 이상을 보상 △국가보조금지원 대상농가에 있어 피해지역의 범위 및 피해액 무제한 △첨단·고가의 영농장비 및 농업시설물 지원 △재해대책예산을 정규 예산 항목으로 편성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한층 강화된 농업재해대책법을 제정해야 한다. 한농연

〈한농연 광고〉



- 일시 : 2002년 10월 10일(목)~10월 13일(일) 4일간
- 장소 : 경주 보문단지
- 주최 : 국내 NGO 단체
- 주관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WTO 범국민 연대
- 참가단체 : 국외 19개국 20여 단체, 국내 NGO 50여 단체
- 주요행사 : 제1세미나 "농업인의 권리"  
제2세미나 "농촌과 환경"  
제3세미나 "기아 및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NGO 연대방안"